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5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24(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24. (목)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채규남 과장(044-203-5860) 고재강 과장(044-203-5870) 정병락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송병철 사무관(044-203-5864) 황의준 주무관(044-203-5866) 나강운 사무관(044-203-5875) 박진현 주무관(044-203-5871) 김종윤 사무관(044-203-5882)

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 에탄올아민의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레깅스 상표권 침해 ·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도 판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5월 24일(목) 제377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과,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건에 대해 모두 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먼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 : 철선에 아연을 용융도금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

○ 아연도금철선('철사'라고도 불림)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16년 기준 약 1천억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되어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하여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14.12.30일부터 국가·수출자별로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무역위원회는 미국·말련·태국·일본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 무역위원회가 위 2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최종결정기한 : 아연도금철선('18.7.31.), 에탄올아민('18.9.3.)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레깅스 상표권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를 완료하여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5:12

○ 상표권침해 조사는 아디다스코리아(유)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개인사업자 A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폐기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제보로 직권조사한 건으로서, 무역위원회는 원산지가 미표시된 중국산 유리거울을 수입·판매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품의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인 감시·적발을 위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19개소를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

□ 무역위원회는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가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18.4.16.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상표권침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 피신청인 C사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05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국내 타일 생산업체인 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17.10.26일부터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와 중국측 수출자 등이 참석하여 관세부과 연장의 타당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18.7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참고】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조사 개요
2.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사 개요
3. 레깅스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4.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5. 의류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6.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공청회 개최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최종판정 : 송병철 사무관(044-203-5864),나강운 사무관(5875)
- 미국산 등 에탄올아민 최종판정 : 황의준 주무관(5866), 박진현 주무관(5871)
- 레깅스 상표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처분 : 김종윤사무관(5882)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공청회 : 박성정주무관(5868)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5:12

참고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 피신청인 : 중국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등 5개사

○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
- 용도 : 철조망, 펜스, 돌망태, 사각게비온,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
- HSK 분류 : 7217.20.0000, 7229.90.9090

□ 국내시장규모('16년) : 1천억원 / 약 12만톤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약 30%, 중국산 약 70%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공급국	공급자	최종덤핑률(%)
중국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 -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 -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 - 화웬웰페어(Tianjin Huayuan Welfare Wire Products Co., Ltd.) - 푸챠오(Tianjin Fuqiao Metal Products Co., Ltd.)	8.60
	그 밖의 공급자	8.60

□ 향후일정

○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관보게재('18.7.31.까지)

참고2 미국, 말련,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 재심사 개요

□ 재심사 개요

○ 신청인(신청일) : KPX그린케미칼(주)('17.6.28.)

○ 피신청인 : 다우(미국), 페트로나스(말련), 티오씨(태국), 미쓰이(일본) 등

○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에탄올아민(Ethanolamine)
- 용도 : 세제, 섬유유연제,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으로 사용
- HSK 분류 : 2922.11.1000, 2922.12.1000, 2922.15.0000*

* 기존 2922.13.1000가 2922.15.0000으로 변경('17.1.1.)

□ 국내시장규모('16년) : 약 400억원 / 약 30천톤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약 50%,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약 30%, 기타 20%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현재 적용중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피요청인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미국	Dow Chemical Company	12.43
	Huntsman Corporation	21.79
	INEOS	21.79
	그 밖의 공급자	14.47
말레이시아	Petronas Chemicals Derivatives Sdn. Bhd.	12.64
	그 밖의 공급자	12.64
태국	TOC Glycol Co., Ltd.	4.36
	그 밖의 공급자	4.36
일본	Mitsui Chemicals Inc.	21.79
	FRP Service & Company	21.79
	Kansai Paint Co., Ltd.	21.79
	그 밖의 공급자	21.79

□ 향후 일정

○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관보게재('18.9.3.까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5:12

참고 3 레깅스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신청인: 아디다스코리아(유)

○ 피신청인: 국내 개인사업자 A(수입업체)

○ 조사대상물품: 레깅스 (HS코드: 6104.63.0000)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및 사용상표
adidas 제0035400호 제0482662호	

□ 조사경과

○ 조사신청서 접수('18.1.26.), 조사개시결정('18.2.21.)

○ 현지조사('18.2월), 서면조사('18.2월 ~ 4월)

○ 최후 의견제출 통지('18.4.27.)

□ 조사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 제품을 베트남에서 수입한바,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임

참고 4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조사개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제보로 직권조사 개시

* 제보내용 : 피조사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리거울을 구입하여 원산지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입한 유리거울의 반사율 측정결과 반사율이 90%에 못 미치는 중국산 알루미늄 거울로 판단됨

○ 피조사인: 국내 개인사업자 B(수입업체)

○ 조사대상물품: 유리거울 (HS코드: 7009)

□ 조사경과

○ 직권조사개시결정('18.2.27.), 현지조사('18.2.28.)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피조사인 답변서 제출('18.3월 ~ 4월)

○ 최후 의견제출 통지('18.4.27.)

□ 조사결과

○ 피조사인은 중국으로부터 원산지를 미표시한 유리거울을 수입한 바,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제1항 제2호)

○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임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5:12

참고 5 의류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

○ **(피신청인)** 국내업체 C사(수입·판매 업체)

○ **(신청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의류)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

○ **(조사신청일)** '18.4.16.

○ **(조사개시결정일)** '18.5.3.

○ **(조사대상물품)** 의류*

* (HS코드) 6109.10.0000, 6106.10.0000, 6105.10.0000, 6205.20.0000, 6206.30.000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및 사용상표
제1022231호 VINCISTAR 제1103884호	

□ 향후 계획

○ **(조사·판정)**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개시 후 6월 이내 판정, 침해 판정시 수입·판매 중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참고 6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3차 재심 공청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5.24(목) 14:00～/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 13동) 회의실

□ 참석자

○ 무역위원회(7명) : 위원장, 위원(6)

○ 참가신청인(25명)
- 요청인측(11명) : 국내생산자(7명), 대리인(2명), 기타 이해관계인(2명)
- 피요청인측(14명) : 수출자(6명), 정부관계자(2명), 대리인(4명), 기타 이해관계인(2명)

○ 무역조사실 : 산업피해조사과장, 조사관 등

□ 조사진행 경과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06. 5. 30. : 덤핑방지관세 부과(원심)

○ '11. 5. 25. : 덤핑방지관세 부과(재심)

○ '15. 1. 7. : 덤핑방지관세 부과(2차 재심)

○ '17. 8. 22. : 종료재심사 요청

○ '17.10. 26. : 재심사개시결정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47호)

○ '18. 5. 24. : 공청회 개최

○ '18. 7월 : 최종판정(예정)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5:12